

한눈에 보는 전남 지자체별 귀어·귀촌인 지원 정책

지자체	사업명	지원대상 및 자격조건	지원형태	사업량/현재상태	증빙서류	연락처
강진군	귀어자 정착 지원사업	▶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귀어 당시 만 64세 이하인 자 ▶ 부모에게 전입하는 미혼자(단독 전입 미혼자 제외) (지원제외 대상) ▶ 강진군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업(業)을 업으로 변경한 자 ▶ 귀어자 중 영여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▶ 위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강진군 귀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할 자	▶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 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▶ 지원기준일 이후 구입 또는 시설하여 영여에 종사한 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 ▶ 어선원부, 매매계약서, 어구 구입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확인	▶ 사업비 : 40,000천원(군비 20,000, 자담 20,000) ▶ 지원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 ▶ 가구당 : 40,000천원 ▶ 사업량 : 1가구(가구당 20,000천원 한도) ※ 지원액은 사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	▶ 귀어자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▶ 귀어자 사업추진 계획서	061-430-3262
	귀어·귀촌인 살터기반 지원사업	▶ 연령기준 : 만 69세 이하인 자(신청년도 기준) ▶ 거주기간 : 고흥군 전입 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▶ 이주기한 :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▶ 지원대상 :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	▶ 생활 기반시설(전기, 통신, 상수도 3개 분야) 조성 사업비 합계액이 10백만원 이상 시 세대 당 5백만원 지원 ※ 주택 관련 타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	▶ 10명, 50백만원	▶ 귀어·귀촌인 살터 기반 지원신청서 등	061-830-6848
신안군	귀어가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	▶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(본인포함 3인 이상)과 함께 관내로 이주를 목적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▶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 교육(이론)을 5일 이상(또는 35시간 이상) 이수한 자 * 수산계 학교 출신자, 취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* 교육 미 이수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	※ 지원제외 대상 ▶ 정부·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(융자)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. 다만, 과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한 업업인은 신청 가능 ▶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▶ 국세·지방세 체납자 ▶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※ 정착지원금의 사용제한 ▶ 술, 담배 등의 기초식품 및 일상용품(과자, 음료 등) ▶ 면세유류 ▶ 유흥업소, 노래방, 당구장 등 * 선지급 가능 항목 이외에는 지출이 발생하였음을 증빙(계약서,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)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산 가능	▶ 6가구, 가구 당 2,000천원 이내에서 지원	▶ 귀어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서 ▶ 귀어가 정착장려금 사업계획서 ▶ 주민등록등본·초본 등	061-240-8413
	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	▶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업 외 타 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▶ 어가주택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귀어인 ▶ 수리지원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▶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 교육(이론)을 5일 이상(또는 35시간 이상) 이수한 자 * 수산계 학교 출신자, 취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* 교육 미 이수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	▶ 수리비는 주택 및 부엌, 화장실,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 한실제 주거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소는 제외) ▶ 실 거주 및 영여종사 확인 후 지원을 원칙 ※ 지원제외 대상 ▶ 귀어귀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, 증·개축한 주택 *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은 신청 가능(신축은 지원받을 수 없음). 단, 현지조사를 통한 주택 상태 및 가수리 여부 확인 ▶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▶ 주택 선 수리 후 신청한 경우 ▶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	▶ 2개소, 가구 당 5,000천원 이내에서 지원	▶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지원사업 신청서 ▶ 어가주택수리 계획서 ▶ 주민등록등본·초본 등	
	신규어업인 현지응용화 지원사업	▶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업 외 타 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▶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 교육(이론)을 5일 이상(또는 35시간 이상) 이수한 자 * 수산계 학교 출신자, 취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* 교육 미 이수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	▶ 떡, 과자, 음료, 현수막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(술, 유류비 제외) ※ 지원제외 대상 ▶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▶ 기존 거주세대(직계존비속)전입 시 지원 불가 *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에 도시에서 거주하던 자식이 전입한 경우는 지원 불가 ▶ 사업신청일 기준 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* 수협 등 조합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등 ▶ 국세·지방세 체납자 ▶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	▶ 10가구, 가구 당 500천원 이내에서 지원	▶ 신규어업인 현지응용화 지원사업 신청서 ▶ 사업계획서 ▶ 가족관계증명서 등	
	귀어인 이사회 지원 사업	▶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*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산식품 가공·제조업 및 어촌 비즈니스를 결합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 ▶ 신안군 전입 후 1년 이내 귀어인으로써 2인 이상 가구의 세대가 관내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*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이주를 한 후 배우자가 1년 이내 이전하여 세대를 합한 경우에는 인정(신청은 세대주 명의로 가능) * 부모와 자녀, 동거인의 세대합가는 대상에서 제외	▶ 떡, 과자, 음료, 현수막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(술, 유류비 제외) ※ 지원제외 대상 ▶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▶ 기존 거주세대(직계존비속) 전입시 지원 불가 *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에 도시에서 거주하던 자식이 전입한 경우는 지원불가 ▶ 사업신청일 기준 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* 수협 등 조합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등 ▶ 국세·지방세 체납자 ▶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	▶ 5가구, 가구 당 1,000천원 이내에서 지원	▶ 귀어인 이사회 지원사업 신청서 ▶ 사업계획서 ▶ 주민등록 등·초본(주소 변경이력 포함) ▶ 가족관계증명서	
여수시	귀어·귀촌 정착금 지원사업	(지원대상) ▶ 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여수시 어촌지역으로 귀어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(지원자격) ▶ 귀어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▶ 귀어 관련 교육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* 수산계 학교 출신자, 취업인후계자 및 어업 경력 3개월 이상인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	▶ 귀어정착금 360만원 지원(30만원*12개월 분할 지급)	▶ 8명, 2,980만원	▶ 주민등록등·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 ▶ 가족관계증명서, 국민건강보험카드 ▶ 귀어귀촌교육수료증 등	061-659-3908
완도군	귀어가 정착지원 사업	▶ 도시지역(읍·면지역 제외)에서 1년 이상 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관내 '농어촌지역'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▶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▶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·귀촌교육(이론)을 1일 이상(또는 7시간 이상) 이수한 자 또는 희망자 (지원제외 대상) ▶ 정부·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(융자)을 대출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 중인 자와 사업장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. 다만,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귀어난 경우는 제외 ▶ 병역미필자, 고등학교·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▶ 연간 재산세(재산세·도시계획세·지방교육세·공동시설세) 20만원 이상인 자 ▶ 군에서 지원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자 ▶ 사업신청일 기준 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재수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 등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등)	▶ 귀어 정착지원금은 어업 활동 영위를 위해 필요한 품목 및 정보통신 관련 기기(PC, 노트북 등) 구매가능 ▶ 수리비는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▶ 주택수리비는 신청자의 경우, 주택을 임대 시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▶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나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	▶ 17어가, 85,000천원 - 가구당 5백만원 한도	▶ 귀어자 정착 지원신청서 ▶ 지방세 완납 증명서, 교육 이수증 ▶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▶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061-550-5101
	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사업	▶ 지원자격 연령은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, 이주기한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·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·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을경영하고자 하는 자 ▶ 거주기간 :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거주한 자. 단,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▶ 비어업기간 :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▶ 교육이수실적 :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·귀촌교육(이론)을 1일 이상(또는 7시간 이상)이수한 자 또는 희망자 ※ 희망자는 멘토-멘티 결연 전 교육이수 완료 (지원제외 대상) ▶ 정부·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(융자)을 대출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. 다만,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귀어난 경우는 제외 ▶ 사업신청일 기준 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재수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 등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등) ▶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「농사관리법」 제2조 제6호의 농사업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	▶ 멘토링 활동 1회당 100천원 활동비 지원(어가당 20회) · 월 2회 이상 최대 5회 활동, 1회당 2시간 이상 · 멘티 1명당 최대 2년간 지원	▶ 10어가, 20,000천원	▶ 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 신청서 ▶ 귀어교육이수증 ▶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	
장흥군	귀어자 주택수리 지원사업	▶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장흥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이하의 귀어인(주소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) ▶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,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▶ 정부·지자체 주관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▶ 귀어자 중 영여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, 어업계 학교 졸업자, 후계 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는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▶ 주택수리비 : 주택구입(상속, 증여 포함)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귀어인 - 주택구입 시 세대주 명의로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와 함께 전입한 세대원 명의로 대해서도 인정 - 신축 주택(건축승인일 기준 5년 미만), 무허가 주택 제외 - 5년 이내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가수리한 주택 제외 -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 및 임차료 입금서류 제출(무상임대차 불인정, 직계 가족간의 임대차 불인정)	▶ 도배, 장판, 지붕, 부엌 등 주택수리 내외부 전반	▶ 8개소, 세대 당 5백만원(보조금 최고지원한도) ※ 5백만원 초과금액 자부담 처리 원칙	(공통서류) ▶ 사업신청서 ▶ 주민등록초본·등본 ▶ 귀어 교육실적 등 (주택수리비) ▶ 수리계획서 등 (창입자금) ▶ 귀어창업계획서 등	061-860-5951
	귀어자 창업 지원사업	▶ 수산분야어선어업, 양식어업,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) 창업 자금 · 양식장, 양어장, 어선,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(단,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) · 어선은 어업면허 취득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	▶ 5개소, 세대 당 10백만원 ※ 총 사업비 3천만원 한도이며, 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50% 지원하되 2천만원 초과금액은 자부담처리 원칙			

※ 지원정책은 시기 및 시·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